

용역 입찰 공고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 의약품 납품 업체 공고』

아래와 같이 공개입찰을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7. 02.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 의약품 납품 업체 선정
- 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85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
- 다. 기본요청사항: 명시된 의약품(의약품 대장 참조)
- 라. 제안방법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제안이 불가하오니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2. 입찰서 제출 및 업체 선정 일시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1. 07. 02 (금) ~ 2021. 07. 09 (금)
※ 입찰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나. 입찰서 제출방법 : 우편 및 직접 제출
- 다. 제안서 제출 일시 : 2021. 07. 09일 (금) 15:00
- 라. 기타 업무관련 및 입찰·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 (☎031-500-7378) 문의바랍니다.

3. 입찰의 내용

제1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의약품 납품
- 나. 입찰내역 : 파일참조
- 다. 납품장소: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 약제팀

제2조 입찰방법

-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제3조 입찰등록 및 선정 일정

- 가. 입찰공고기간: 2021년 07월 02일 ~ 07월 09일
-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2021년 07월 09일(화) 15:00
- 다. 업체 서류: 약품품목 제안서
- 라. 업체선정 통보: 2021년 07월 15일
- 마. 계약체결: 2021년 07월 19일

제4조 입찰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에 납품이 가능한 자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판단 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5 입찰(참가서) 제출

- 가. 제출방법: 참가서 작성 후 직접제출
- 나. 제출장소: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 행정부(행정부: 031)500-7378)

제6조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30조 4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대상자 선정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바탕으로 회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업체는 계약 시 약품의 제약회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생산 중단 등으로 인한 계약 약품의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계약상대자 및 준수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 선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내역서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 승낙 및 서약서
2.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다른 해당품목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허가증 등(등록증, 신고증 등)
3. 기타 입찰 등 병원에서 요구한 서류

제9조 관계사항의 숙지

가. 입찰자는 입찰 공고조건, 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 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입찰의 연기 등

가. 본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도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본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본원은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업체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제11조 입찰서의 제출 등

가. 입찰서는 봉합하여 1업체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화통보 합니다.

제1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제13조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소종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본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계약은 본원과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됩니다.

제14조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다. 약품 및 단가 견적서

라. 위임장(대리인 참석의 경우)

마. 사업자등록증

바. 인감증명서

사. 납세증명서

아. 재무제표

제15조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약품은 명시된 약품과 동일한 약품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일효능의 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동일효능 이하의 약품으로 납품하고자 할 경우 부정당 업체로 제재당할 수 있음.)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립노인전문시흥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립노인전문시흥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립노인전문시흥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립노인전문시흥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

